안산시 대부해양관광본부 해양수산과 제2016 - 3 호

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제35조(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)에 따라 낚시 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· 선원 및 낚시어선 승객의 준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. 6. 2.

안 산 시 장

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· 선원 및 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

- 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5조 제2항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운항,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, 수질 오염의 방지 및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·선원 및 낚시어선 승객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이 고시는 법 제25조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자와 선원 및 낚시어선 승객에 대하여 적용한다.
- 제3조(영업시간)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낚시어선(이하 "낚시어선" 이라 한다)의 영업시간은 일출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로 한다.
- 제4조(운항횟수)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켜 낚시 장소에 안내하는 행위를 1일 2회 초과 하여서는 아니되며, 1회차 낚시승객을 낚시장소에 안내하여 낚시승객이 낚시장소에 있을 경우 2회차 승객과 1회차 승객의 합은 승선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- 제5조(영업구역) ①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경기도지사와 인천광역시장의 관할수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한다.
- 1.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, 해사안전법, 항만법, 개항질서법, 선박안 전조업규칙, 어선안전조업규정 등에 의한 제한 및 통제구역의 해역
- 2. 해주서(영흥도와 선재도 사이), 제부도 매바위, 대부남동 고랫부리, 선감도 누에섬 부근, 낚시어선 영업구역 내의 무인도와 갯바위 및 간출암
- ③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의 승객을 도서에 안내하는 경우 승객이 낚시 장소에서 야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6조(영업거리)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켜 선상낚시 영업을 하는 경우 육지(계류항)에서 50마일 이내 수역에서 하여야 한다(단, 영업구역 출입항 신고소와 교신가능거리 이내).
- 제7조(안전운항 등 준수사항) ①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1. 인명의 안전에 관한 설비기준을 갖추고 안전운항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- 2. 정원초과숭선을 금지하여야 하고 낚시어선 숭선정원 및 숭객준수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.
- 3. 안전운항을 위하여 낚시승객 전원에게 구명동의를 착용시켜야 한다.
- 4. 낚시장소에 승객을 안내한 때에는 승객과 상호 연락체계를 유지(낚시 어선업자, 선원 및 승객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록하여 교환하는 것을

말한다)하고 기상악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낚시어선 승객을 안전 하게 대피시켜야 한다.

- 5. 낚시어선 승객이 안전대피조치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인근 해양경비안 전서, 경찰서, 군부대, 소방서 등에 대피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.
- 6.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유류·분뇨·폐기물 등을 해상투기하면 안되며, 낚시어선 승객으로 인하여 발생된 쓰레기 등을 수거하기 위한 수거함 등을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.
- 7. 호우, 대설, 폭풍해일, 지진해일, 태풍, 강풍, 풍랑, 안개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된 경우와 안개 등으로 인하여 해상에서의 시계(視界)가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, 그 밖에 출입항 신고 기관의 장이 해상 상황의 급작스런 악화 등으로 인하여 낚시어선의 출항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출항하지 말아야 한다.
- 8. 낚시어선업자는 술에 취한 상태, 마약·향정신성의약품·대마 또는 환각 물질 등의 약물복용 상태에서는 낚시어선을 조종하여서는 아니된다.
- 9. 항해 중에는 VHF 등 무선설비 및 V-pass 등 위치발신장치를 정상 작동시켜야 한다.
- 10. 승선하려는 승객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여 승선자 명부의 기재내용과 본인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11. 승객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숭선을 거부하여야 한다.
- ② 낚시어선 승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1.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
- 2.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구명동의 착용 요청에 대한 불응 및 기타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

- 3. 낚시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해상에 투기하는 행위
- 4.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·채취가 금지되는 기간·구역 및 수심과 수산자원의 포획·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5. 낚시장소에서 낚시행위 중 기상 악화 등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낚시 어선업자 및 선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- 6. 제3조에 따른 영업시간 외 항행 및 제5조에 따른 영업구역이 아닌 수역에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
- 7. 낚시어선 승객은 선내에서 술을 마시고 기타 안전운항 등에 방해되는 행위
- 8. 승선자 명부 작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신분증 제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
- ③ 낚시어선업자, 선원 및 낚시어선 승객은 인천광역시 또는 다른 시 관할 수역에서 영업 및 낚시를 하는 경우 해당수역 관할 시장이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제35조에 따라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제8조(사고발생의 보고)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낚시어선 승객의 사망, 실종사고 및 낚시어선의 충돌·좌초 등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우리 시 및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그 사 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고시의 폐지) 이 고시의 시행 전 낚시어선업법에 따른 낚시

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 고시(안산시 고시 제2013-4호)는 폐지한다.

제3조(재검토기한) 이 고시는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(대통령훈령 제334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재검토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3월 19일까지로 한다.